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특례상장 확대 및 외국기업 관리 강화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시행 2019. 7. 1.)을 통해 우수 기술기업 상장활성화 및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상장·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특례상장 활성화

코스닥시장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장할 수 있는 대상(이하 “기술 평가특례”)을 기존에는 국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성장성이 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외국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중소기업이 아닌 국내법인(이하 “스케일업 기업”) 및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지국에 설립된 외국기업(사업자회사 포함)이 일정요건¹⁾을 충족하는 경우 기술평가특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할 수 있는 대상(이하 “성장성특례”)도 기존 국내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을 경우(AA & A 이상)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심사를 면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 절차도 면제하였습니다.

기술특례상장 대상 확대 주요 개정내용

상장방식	개정 전 대상	개정 후 대상
기술평가특례	중소기업	국내법인(중소기업, 스케일업 기업), 일정요건 충족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지국 설립 외국기업
성장성특례	중소기업	국내법인(중소기업, 스케일업 기업)

*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홍콩, 호주, 싱가폴, 프랑스 등 유로넥스트 소재국

** ① 기술평가등급이 모두 A 이상(A & A 이상), ②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내 외국기업 주선실적이 있고 부실기업(상장 후 2년 내 관리종목지정 등) 주선실적은 없을 것, ③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한도 상향[max(5%, 25억 원 → 50억 원)]

2 업종별 차별화된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

코스닥시장은 상장심사 시 적용되는 질적 심사기준 중 기업계속성 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범용화되어 있어, 아직 관련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4차산업 및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계속성 심사항목 중 일부를 혁신성 요건을 중심으로 개선하여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계속성 심사항목 주요 개정내용

상장방식	심사항목	개정 후(⇒일부 업종 차별화)			
		상장방식	업종	심사항목	
기술성장 기업	영업상황/기술성·사업성/ 성장성/기타경영환경	기술성장 기업	바이오 업종 ⁽¹⁾	기술성(원천기술보유, R&D역량, 사업성 등)/ 영업상황/성장성/기타경영환경	
			4차 산업 ⁽²⁾	혁신성(사업·기술의 혁신성 등)/ 기술성(기술 실현가능성, 상용화가능성 등)/ 성장성(성장잠재력, 사업확장성 등)/ 기타경영환경	
이익 미실현 기업	영업상황/재무상황/ 성장성/기타경영환경	이익 미실현 기업	4차 산업	혁신성(사업·기술의 혁신성 등)/ 성장성(성장잠재력, 사업확장성 등)/ 재무상황/기타경영환경	

(1) 국가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에 따른 바이오산업 또는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가 분류한 4차산업 전략분야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또한, 장기간 연구개발 및 높은 매출변동성을 보이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산업특성을 감안하여,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특례, 성장성특례) 요건으로 상장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적용되는 매출액 미달(30억 원 미만) 관련 관리종목지정 등의 시장조치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었습니다. 즉, 일시적 매출 악화³⁾, 연구개발 우수기업(제약산업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및 시장평가 우수기업(최근 사업연도 일평균시가총액 4천억 원 이상)에 대해 매출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지정을 면제하였습니다.

매출액 미달 관련 업종별 관리종목지정 개선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상장 후 5년	5년 이후	상장 후 5년	5년 이후
기술 성장 기업	제약·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 그외	면제	면제
	그외		면제	면제
이익 미실현 기업		이익 미실현 기업	면제	면제
그외 기업		지정	지정	지정

*일시적 매출 악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 원 이상인 경우. 단,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시는 제외

3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및 관리 강화

코스닥시장은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상장 외국기업 및 이미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외국기업 신규상장의 경우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지국** 이외 국가에 설립된 외국기업은 ① 역외지주 방식으로 상장하는 경우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²⁾ 방식으로만 상장을 허용하였으며(국내 법 적용), ② 직접 상장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대형회계법인(Big4)으로만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외국기업(1차상장) 설립지국별 감사인 자격 개정 주요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설립지	상장방식	개정 전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 국가	직상장 역외지주상장	국내 회계법인 (회원사 30개국&회계사 2천 명 이상인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 체결 등)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지국 이외 국가	직상장 역외지주상장	국내 대형회계법인(Big4)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 체결 등

이미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시 외감법 규제를 준용⁴⁾하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도 국내기업 수준으로 강화(순차적 외부감사 의무화)⁵⁾하였습니다.

또한, 외국기업 신규상장 시 국내사무소 설치 및 한국인 사외이사 1인 이상 선임의무를 상장 계약서에 반영하고(1차 상장만 해당), 대표이사가 관계 법규 준수 등을 확약하는 “대표이사 의무이행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금번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및 관리 강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자본시장 국제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외국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국내회사로서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

**(감사인 선임 및 해임)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내 외부감사인 선임(연속 3개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외감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해임사유(감사인의 기밀누설, 부당요구 등) 발생 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해임 및 해임 후 2개월 내 재선임

***(감사의무화 일정) 자산 2조 원 이상(FY2019), 5천억 원 이상(FY2020), 1천억 원 이상(FY2022), 모두 적용(FY2023)

담당 변호사/전문가

이행규 변호사 김병률 고문 장영은 전문위원

T. 02-6200-1744 E. hglee@jipyong.com

T. 02-6200-1824 E. briankim@jipyong.com

T. 02-6200-1859 E. yejang@jipyong.com

[Newsletter PDF Download](#) 법무법인(유) 지평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뉴스레터 신청 | 해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춘천 | 부산 | 상해 | 홍콩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Copyright(C) JIPYONG LLC All rights reserved.